

의안번호	제331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6월 일 (제311회)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윤성옥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5월 일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성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3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5월 일

발 의 자 : 윤성옥 · 김봉희 · 정 현 · 김종필 ·
김희수 · 박문희 · 황규철 의원(7명)

1. 제안 이유

-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,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노사민정협의회 설치, 구성 및 기능 조항 신설(안 제2조)
- 나. 일부 조문의 정비(안 제3조, 안 제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제2조의1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내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충청북도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.

④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충청북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

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중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도지사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협의회”로 하고,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충청북도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.</p> <p>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	<p>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</p> <p>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</p> <p>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4. 충청북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</p> <p>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</p> <p>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위원의 임기) ① ~ ② (생략)</p> <p>제3조(위원의 해촉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 (생략)</p> <p>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2조의1(위원의 임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 -----<u>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<u>총괄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"지역 노사민정"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<개정 2012.4.16>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<개정 2012.4.16>

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12.4.16>

- 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- 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- 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2.4.16>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4.16>